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합54016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변론 종결 2019. 12. 5.

판결 선고 2019. 12.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4,469,220원 및 그 중 440,863,866원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망 D과 피고 C 사이에 2017. 1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C에게 배당된 156,955,533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위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4,469,220원 및 그 중 440,863,866원에 대하여 2018.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16,640,000원, 보증기한 2017. 5.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5. 26. 보증원금이 112,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8. 5. 30.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9.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F은행으로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340,000,000원, 보증기한 2017. 9.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9. 12. 보증원금이 323,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8. 9. 19.로변경되었다(이하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3)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차, 2차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한편 피고 회사와 망인은 1차, 2차 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비용인 대지급금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6. 2. 1.부터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였다.

나. 구상금채무의 발생

1) 원고는 1차, 2차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각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회사는 위 각 보증약정 무렵 F은행으로부터 1차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보증번호:G)를 담보로

145,800,000원을, 2차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보증번호: H)를 담보로 4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피고 회사는 2018. 2. 13. 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켜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 원고는 2018. 5. 21. F은행에 1차 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12,351,342원, 2차 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328,512,524원 합계 440,863,8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 망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인한 대지급금으로 15,222,220원을 지출하고 1,616,866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지급금은 13,605,354원(=15,222,220원 - 1,616,866원)이 남게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경매 및 배당표 작성1) 망인은 2017. 12. 22.

여동생인 피고 C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22. 접수 제649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은 49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망인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440,863,866원의 구상금채무, 기업은행에 대한 435,981,299원의 대출 및 신용카드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266,455,048원의 채무 등 합계 1,143,300,213원에 이르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8. 5. 25.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9. 8. 1.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156,955,533원을 교부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현재 피고 C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라. 망인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1)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1.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I, 자녀인 J, K은 2018.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느단38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5. 4.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망인의 어머니인 L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느단20025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7. 2.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C는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느단74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7. 2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2) 망인의 동생인 피고 B은 2018. 7. 12. 2018느단74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8. 9. 18.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54,469,220원(=대위변제금 440,863,866원 + 대지급금13,605,35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40,863,86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5.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인 2018. 12.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망인과 피고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7. 12. 22. 당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실제로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6. 5.31. 1차 보증약정이, 2016. 9. 20. 2차 보증약정이 각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인 2018. 2. 13. 원금 연체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1차, 2차 보증약정에 터 잡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8. 5. 21.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망인이 피고 C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그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망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2017. 12. 14. 피고 C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뒤 위 차용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 C 스스로 위 2017. 12. 14.자 차용금 100,000,000원 전액이 망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망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융통을 위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망인이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단기간돈을 빌려주어 오다가 2017. 1.경 망인에게 230,000,000원, 2017. 4. 27. 150,000,000원[다만, 차용증(을다 제1호증)은 100,000,000원을 빌려준 것으로 작성하였다], 2017. 12.14.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실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믿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망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다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와 망인은 친남매지간으로서 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는 후 약 2달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② 피고 C는 2016. 9. 28.부터 피고 회사에서 자금결제 등 입출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③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망인에게 합계 380,000,000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다가 추가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다 제8, 9, 10, 13호증 등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배당금 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 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는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2019. 8. 1. 피고 C가 근저당권자로서 156,955,533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그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진 위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구준모, 판사 남요섭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18.6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7603.8㎡

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6723.8㎡

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47324.5㎡

대지권의 종류: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61652.1분의 53.86 끝.